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등 >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9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 정비 및 지급된 금품 등의 압류금지	3
2.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8
3.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 폐지	11
4. 공동모금재원 표시의무를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	16
II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9

I. 개요

1.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69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6.

(3) 회 부 일 : 2025. 3. 7.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나.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

지함(안 제20조의2).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 정비 및 지급된 금품 등의 압류금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안 제11조제1호),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략) 3. (생략) <u><신설></u>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 ----- 1. <u>「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의</u> ----- ----- 2.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4(압류금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u>

나. 검토의견

- (임원 결격사유) 종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10월 24일에 삭제되었고, 유사한 결격사유를 제19조로 옮겨 규정하면서 부칙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제7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제40조제4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음.¹⁾

이처럼 다른 법률의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면서 그 법률의 부칙을 통해 다시 또 다른 법률의 결격사유를 인용한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은 법률의 수범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규정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632)이 2024년 12월 18일 발의

1)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 2017.10.24.)

부칙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8, 제41조의3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되었고, 이후 대안으로 묶여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으며, 2025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었음.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제11조제1호에는 개정안에서 결격 사유로 추가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 2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25년 4월 1일 시행된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

현 행(2025년 4월 1일 시행)	개 정 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u>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2.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u>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 (압류금지) 개정안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배분대상자의 복지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50)이 2024년 12월 17일 발의되었고, 이후 대안으로 묶여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2025년 10월 2일자로 시행될 예정임.

□ 2025년 10월 2일자로 시행될 개정 조문은 개정안과 같이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 및 권리의 압류를 금지하면서, 개정안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양도 및 담보제공도 함께 금지하고 있음.

이는 당초 권리를 부여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과 유사입법례²⁾를 고려하여 기부금품 및 권리의 양도·담보 금지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시행 예정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25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과 개정안 비교 >

시행 예정(2025년 10월 2일)	개 정 안
제24조의2(압류 등 금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기부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의4(압류금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한편, 국세청은 안 제20조의4(압류금지)에 대해 공동모금재원 배분 대상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못하여 체납한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다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곤란(삭제)’ 의견을 제출 하였음.

2.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효율적인 모금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는 집중 모금의 근거 및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4항 및 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 ③ (생략)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8조제4항³⁾에 따른 집중모금은 매년 약 2개월 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연말연시 ‘희망나눔캠페인’으로 진행되며, 매년 주요 지원 분야를 설정한 후 모금을 실시하고 있음.

- 희망2025나눔캠페인('24.12.~'25.1.) 4대 지원분야는 사회안전망 지원, 지역사회 돌봄 지원, 교육·자립 역량강화 지원 및 신(新) 사회문제 대응 지원 등이 있음.

< 최근 5년간 집중모금 실시 현황 >

구분	캠페인 기간	모금 목표액	최종 모금액
희망2025나눔캠페인	'24.12~'25.1	4,497억원	4,915억원
희망2024나눔캠페인	'23.12~'24.1	4,349억원	4,880억원
희망2023나눔캠페인	'22.12~'23.1	4,040억원	4,494억원
희망2022나눔캠페인	'21.12~'22.1	3,700억원	4,279억원
희망2021나눔캠페인	'20.12~'21.1	3,500억원	4,045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 집중모금은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진행하는 것일 뿐, 별도의 내용이나 혜택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집중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일 15일 전과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모금회는 제18조제1항4)에 따라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근거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효율적인 모금을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집중모금을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사전·사후보고 등 부차적인 절차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이 모금회로 하여금 더 효율적인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의 경우, 장관이 보고에 따라 집중모금을 승인하거나 허가하려는 것은 아니고,

법 제31조제1항5)에 따라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운영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모금에 대한 사전·사후보고 의무를 삭제하더라도 모금회의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을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배부함에 있어, 100분의 10이라는 배분 한도를 폐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인용하지 않으며(안 제20조의2),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 ----- <u>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u> ----- -----.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u>개발도상국가를</u>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1. <u>개발도상국가를</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배분신청) ① (생략)	제21조(배분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 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5조에 따르면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27조제1항에서는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금회는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함.⁶⁾

한편, 법 제20조의2⁷⁾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모금회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

제1호8)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0조의2제1호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인용하지 않고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사목은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비지정 기부금품 중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배분되는 금액은 전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배분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아닌 다른 자가 시행하는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도 기부금품이 배분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배분된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지정기부금	207,741	204,731	212,786	209,471	219,231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1,500 (0.7)	925 (0.4)	1,045 (0.5)	1,409 (0.6)	1,034 (0.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500 (100)	925 (100)	1,045 (100)	1,409 (100)	1,034 (100)

* 비지정기부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지원 비율

**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비율

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 나.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 다.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 라.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 마.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바.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 사.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현행법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비지정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배분금액은 100분의 1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배분한도를 삭제하더라도 비지정 기부금품의 배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비지정 기부금품의 배분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배분이 한 분야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⁹⁾에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비지정 기부금품을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정 필요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법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¹⁰⁾,

사업계획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제27조의3¹¹⁾에 따르면, ① 사업의 필요성 또는 사업목적, ②사업대상, ③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제26조(배분원칙) ② 배분은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활동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행하는 자를 넓게 포괄하여야 한다.

③ 배분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프로그램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1조(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제27조의3(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또는 사업목적 2. 사업대상 3.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이는 대부분 배분신청서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점¹²⁾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배분신청서 제출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12) p.20 참고자료 참조.

4. 공동모금재원 표시의무를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u>표시하여야 한다.</u>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 ----- ----- --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조¹³⁾ 및 제3조제2항¹⁴⁾에 따르면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하므로,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기본 원칙)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다만, 모금회에서 배분된 것임을 표시하는 경우 배분 대상자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배분 표시 의무를 재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¹⁵⁾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에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법 제24조¹⁶⁾에서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그 밖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표시의무를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더라도 공동모금재원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배분자 표시 관련 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관>

제27조의4(배분자의 표시) 법 제20조의3에 따라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배분규정>

제5조의8(배분자의 표시) ①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배분자의 표시는 배분을 받은 자가 모금회가 배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분자의 표시 방법·수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5) 모금회가 배분한 물품에 모금회 로고나 기관명이 표시되어 있어 해당 물품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함('19년 복지위 국정감사, 오세세 의원)

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배분결과와 공고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배분세칙>

제35조(배분자의 표시방법·수단) 「배분규정」 제5조의8제2항에 따른 배분자의 표시방법은 현금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을 받는 자의 통장에 모금회의 명의를 표시하고, 현금 이외의 현물을 배분하는 경우 현물의 배분에 관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수단으로 모금회의 명의를 표시한다.

<현물모금과 배분에 관한 세칙>

제14조(현물 배분의 표시) ① 현물을 배분대상자에게 배분시 법 제20조의3에 따라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배분사업의 성과에 따라 표시 방법을 정한다.

1. 배분하는 현물에 별도의 스티커, 도장 등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할 수 있는 제작물을 부착 또는 표시한다. 단, 배분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수확인증에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배분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그 외 현물 배분 표시에 대한 사항은 제16조의 현물사업업무편람을 따른다.

□ 한편, 배분자의 표시의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재량을 부여한다면, 법 제35조제3항제4호¹⁷⁾의 벌칙 규정을 같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임.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Ⅲ.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 (보건복지부) 원안에 동의함. 다만, 안 제11조제1호, 안 제20조의4의 경우 이미 유사취지로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음.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견 없음
- ☐ (국제보건의료지원재단) 개정안의 목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국제보건의료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배분신청서 표준 양식(공통)18)
-------------	---------------------------

배분신청서

기 관 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명	<대상+목적+방법 : 부제>					
사업 기본 정보	연차	___①1년차 ___②2년차 ___③3년차 ___④기타()				
	대상 지역			사업수행 인력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사업 참여자	참여자 구분	___①아동/청소년 ___②노인 ___③장애인 ___④여성/다문화 ___⑤위기가정 ___⑥지역사회 ___⑦북한/해외				
	핵심 참여자			인원수	명	
사업구분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 기초생계 지원		☐ 경제적 빈곤 퇴치 ☐ 영양 및 급식지원/기아종식				
☐ 교육/자립 지원		☐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 적정기술과 정보기술격차 해소 지원				
☐ 주거/환경 개선		☐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기후변화와 대응 ☐ 해양생태계 보존 ☐ 육상생태계 보호				
☐ 보건/의료 지원		☐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 깨끗한 물과 위생				
☐ 심리/정서 지원		☐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 사회적 돌봄 강화		☐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 소통과 참여 확대		☐ 성평등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				
☐ 문화 격차 해소		☐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성과목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기					
주요 사업내용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신청금액	원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원	인건비	원	관리 운영비	원
		%		%		%
담 당 자	성명			직통전화	E-mail	@
	직위			휴대폰	FAX	

위와 같이 2025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18) 온라인 배분신청 시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작성